

「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인 가구 증가, 고령화 등으로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간편식·메디푸드·기능성식품 등 식품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푸드테크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어 푸드테크 산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(안 제4조~제5조)
- 육성 및 지원 사업(안 제6조)
-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위원회 설치(안 제7조~제11조)
- 협력체계의 구축(안 제12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조제1호
 -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4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푸드테크 관련 제품 수요의 확대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푸드테크 관련 연구·개발 지원,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·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푸드테크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식품 기술 수요시설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